



#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,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

(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1다218755 판결)

## 1. 사안 및 쟁점

H사(원청)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, C사(수급인)는 선박의장품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H사로부터 선박 보수공사 중 핸드레일(안전난간)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.

C사 소속 근로자(이하 '재해근로자')는 2022. 2. 19.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. 이에 관하여, ① H사의 대표이사, 조선소장(안전보건관리책임자), 수리사업팀 이사, 수리사업팀의장담당자, C사의 대표이사는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도록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(업무상과실치사의 점), ② H사, C사, H사 조선소장, C사 현장소장은 동일한 내용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(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), ③ H사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{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중대재해처벌법') 위반(산업재해치사)의 점}으로 각 기소되었습니다.

## 2. 법원의 판단

[원심] 제1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, 특히 H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, H사에 대해서는 벌금 20억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. 검사와 H사측 피고인들이 항소하였는데, 원심은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고, 양형에 변동은 없었습니다. 원심판결 이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(1)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관련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안전보건규칙의 구체적 의무 내용과 산업현장의 특성을 토대로, 입법 목적과 사

업장 규모, 작업 성격, 위험의 내용, 기술 수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, 형식적 준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음. 특히 동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(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)

- 선박의 갑판하 2층 통로가 지상 8m 높이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, 상부 안전난간이 소실되고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가 없었으므로,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함.
- 구조상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작업 시 고리를 결착하라고 교육, 지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,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함

## (2)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관련

-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시간공간적으로 중첩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작업일정 조율 내지 감독, 현장 관리 통제 없이 두 작업을 동시에 허가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

## (3)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

-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(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), ②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(동조 제7호), ③ 도급, 용역 위탁 시 필요한 절차 마련(동조 제9호)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추락방호망 등 사고 예방 조치가 가능하였으나, 이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, H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.
-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음

[대법원]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.

## 3. 의의

본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법원에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, 확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.

## 관련구성원

### 기영석

변호사

02-316-4021

ysgi@shinkim.com

### 이세리

변호사

02-316-4034

srlee@shinkim.com

### 조찬영

변호사

02-316-4109

cyocho@shinkim.com

### 박성기

변호사

02-316-4280

skipark@shinkim.com

**김종수**

변호사

02-316-1678

jsokim@shinkim.com

**송우용**

변호사

02-316-1696

wysong@shinkim.com

**윤혜영**

변호사

02-316-4491

hyyun@shinkim.com

**김종현**

변호사

02-316-1721

johkim@shinkim.com